

심의결과 통보서

IRB No.	30-2020-054										
	■ 기관심의										
제출경로	□ 지정심의 (연구협약기관 :)										
	□ 고도시이	(연구실시기관: □ 서울대병원 □ 분당서울대병원 □ 보라매병원)									
	□ 공동심의	(대표	IRB기관	: [] 서울대병	원 [□ 분당서	울대병	령원 □ 보라매병원)		
연구 과제명	(국문) 담낭 용종의 위험 인자: 담낭 용종과 지방간, 내장지방, 근육감소증의 상관 관계 관한 연구										
	(영문) Risk factors of gallbladder polyps: The Association Between gallbladder polyp and fatty liver, visceral fat, and sarcopenia										
Protocol No.				Version No.							
연구	성명				소속(과)				직위		
책임자	안동	안동원			소화기내과				임상교수		
생명윤리법에 따른 분류	■인간대상연구 □인체유래물연구										
	■임상시험 외	□ 전향적 연구 ■ 후향적 연구									
	연구	□ 시판후 조사(PMS)									
	□임상시험	연구 대상 -	□ 의약	□ 의약품 □ 생물학적체제 □ 건강기능식품			식품				
연구 종류			□ 화장품				료기기(분류번호(등급):)				
			일반명		□ 위 		약사용(여무			
		Phase	= ^{교인 3}	<u> </u> 상 [] 제1/2상				당 □ 제3상 □ 제4상		
			□ 생물학적동등성 □ Phase분류 없음 □ 기타								
		의료기기 임상시험 단계		□ 탐	□ 탐색 임상시험 □] 확증	·임상시험		
		식약처		□ 승	인 대상	식으	약처 승인일				
		대상 ㅇ	卢부 	□ 승	승인 제외 대상						
		보험 가입 여부		여	예		오				
	임상시험 목		목적		, _ ,		H허가용(MFDS)				
				□ 해	외 허가용		(국가명	<u> :</u>)		
최초 계획서 숭인일	2020년 06월 24	1일 (정기년	^년 고주기	: 127	개월) -						

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

숭인유효만료일	2021년 06월 23일	심의대상	연구계획심의 의뢰서(시정승인에 대 한 답변)		
심의 종류	신속심의	심의 일자	2020년 06월 24일		
심의결과통보일	2020년 06월 24일				

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

연구의 위험도	최소 위험(Minimal risk)				
심의 목록	IRB연구계획서_GB polyps_20200612 수정.docx 증례기록서_20200622수정.xlsx				
심의 결과	승인				
심의의견	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이 적절함을 확인합니다. IRB 승인기준에 부합하여 연구계획 승인합니다.				

- ※ 본 통보서에 기재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.
- * 본 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KGCP 및 ICH-GCP를 준수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.
- ※ 본 연구와 이해상충(Conflict of Interest)가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연구의 심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.

2020년 06월 24일



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

Tel: 82-2-870-1851(IRB사무국)/82-2-870-1852(교육,정책)/82-8-870-1853(QA)

FAX : 82-2-870-1859/2860 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(우)07061

본 위원회에서 숭인된 모든 연구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1) 연구계획서 및 변경계획서의 승인 이전에 연구대상자의 해당 임상연구의 참여가 금지됩니다.

- 2) 승인 받은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 변경계획서에 대한 승인 이전에 원 임상연구 계획서와 다른 임상연구의 실시는 금지됩니다.
- 3) IRB 승인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4) 연구대상자에게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동의과정을 수행할 것이며,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참여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5) 연구진행에 있어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의 어떠한 변경이 든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수행하여야 합니다. 연구대상자들의 보호를 위해 취해진 어떠한 응급상황에서 변경도 즉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- 6)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한 즉각적 위험 요소의 제거가 필요하여 원 계획서와 다르게 연구를 실시 해야 하는 경우,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증가 시키거나 연구의 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,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이상약물/의료기기 반응에 관한 사항, 연구대상자의 안전성이나 임상연구의 실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합니다.
- 7)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대상자 모집 광고문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8) 위원회의 승인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1년 이상 연구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차지속보고를 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요구한 중간보고주기에 따라 연구 진행과 관련한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9) 심의결과가 승인이 아닌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심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 어져야합니다.
- 10)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심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한 번의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.
- 11) 연구종료 시에는 종료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12)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, 약사법/의료기기법, 헬싱키 선언 및 ICH-GCP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13) 헬싱키선언에 따라 모든 임상시험은 첫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전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(primary registry)에 연구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하며, 예를들어 http://register.clinicaltrials.gov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상세한 내용은 IRB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.
- 14) 승인 받은 연구에 대하여 기관의 내부 점검 및 외부의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기관의 내부 점검자, 외부의 모니터요원 및 점검자, 규제기관의 실태조사자 등이 연구 관련 문서(전 자문서 포함)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연구담당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